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자료 25-078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

발 행 인 강경성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5년 6월
판 사 항 개정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중소·혁신기업팀
I S B N 979-11-402-1368-9(95320)(PDF)



Copyright ©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Contents

PART 01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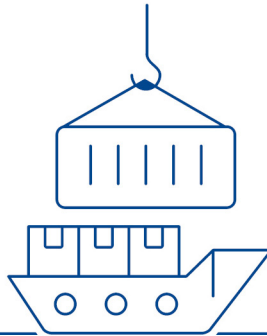
1	관세대응 119 상담	06
2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07
3	美관세대응 119 헬프데스크	08
4	관세대응 바우처사업	10
5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긴급지사화 사업	12
6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	14
7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15
8	통상·이슈 정보 전파	17
9	KOTRA FTA해외활용지원센터	18

PART 02

정부·유관기관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20

PART 01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1

관세대응 119 상담

사업소개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대체 시장
사업파트너 발굴, 유관기관 사업 정보 등 다양한 애로 상담 수행

| 지원대상 |

- ▶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 지원시기 |

- ▶ 연중 상시

| 세부 지원 사항 |

- ▶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수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세부내용 : 관세, 수입규제, 인허가, 인증, 현지진출, 법률

| 이용 방법 및 문의처 |

채널 유형	세부내용
전화 상담	고객안내센터(1600-7119) → 5번 '관세대응 119' 선택
온라인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 우측 하단 '관세대응 119' 배너 → 상단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24시간 운영
카카오톡	하단 채팅 → 상단 돋보기 아이콘 → 'KOTRA' 검색 → 채널 'KOTRA(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선택 → 당일 운영시간 확인 후 상담원 채팅 옆 '문의' 클릭

| 유의 사항 |

- ▶ 관세대응 119 상담 내용은 참고용이며 미국 통상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출 시에는 해당 수입국 바이어나 통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과 수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KOTRA 및 소속 직원은 제공된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2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사업소개



미국 관세 부과 발표 내용 관련 자사의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기타 특이 사항을 파악

| 지원대상 |

- ▶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 지원시기 |

- ▶ 연중 상시

| 세부 지원 사항 |

지원사항	세부내용
미국 관세율 확인	미국 관세 발표 내용을 수시로 반영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관세율 확인이 가능
제3국으로의 수출 시 관세율 확인	제3국(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관세율 확인

| 사업 신청 방법 |

- ▶ 무역투자24(www.kotra.or.kr) 우측 하단 관세대응 119 배너 클릭
 ➔ 하단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문의처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3

美관세대응 119 헬프데스크

사업소개



美관세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주요 국가에 헬프데스크(9개국 20개소) 운영을 통한 애로상담 및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

- ▶ 멕시코·캐나다·미국·중국·동남아·서남아 지역 등 해외진출기업

| 지원시기 |

- ▶ 연중 상시

| 이용방법 |

- ▶ 관세 대응 119 상담과 동일, 현지 진출기업은 해당 해외무역관에 유선 및 방문 상담 가능

헬프데스크 운영 현황

지역(개소)	국가(개소)	무역관
중남미(1)	멕시코(1)	멕시코시티
북미(9)	미국(7)	뉴욕, 실리콘벨리, 시카고, 달라스, LA,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캐나다(2)	밴쿠버, 토론토
중국(3)	중국(3)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동남아 대양주(5)	베트남(2)	하노이, 호치민
	태국(1)	방콕
	말레이시아(1)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1)	자카르타
서남아(2)	인도(2)	뉴델리, 첸나이

| 세부 지원 사항 |

지원사항	세부내용
현지경영 애로해소	현지 전문가 활용 분야별(관세·법률 등)심층상담, 주요국 통상정책 정보 제공 등
대체시장 발굴	진출기업의 현지 내수 판매처 발굴 및 인근 국가 대체시장 진출 지원 등
생산기지 이전	제 3국 투자 대체지 조사 및 법인설립, 국내복귀 지원제도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등

I 이용 방법 및 문의처 I

- ▶ 무역관 대표번호 연락 → 헬프데스크 전용라인 연결 → 상담 → 필요 시 현지 자문사 심층상담
순 이용

경로	방법	운영시간
온라인	www.kotra.or.kr 웹사이트 상단 '문의·상담' → 왼쪽 '온라인상담' → 중간 아래 '상담신청' (관세대응 119 온라인 상담 절차와 동일)	접수 후 72시가 내 답변 (회원 이메일로 알림)
전화·이메일	관세대응 119 헬프데스크 담당자 문의 (하단 참조)	해외무역관 업무시간 *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문의처

지역 본부	국가	헬프데스크	대표번호	이메일	현지 자문사	
					분야	개사
동남아 대양주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14)	jhsong94@kotra.or.kr	회계	1
			+84-28-3822-3944(133)	jy92@kotra.or.kr		
		하노이	+84-24-3946-0511(164)	kimkdon@kotra.or.kr	회계	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60-3-2117-7104	seyoung@kotra.or.kr	회계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1-574-1522(110)	narae.kang@kotra.or.kr	법률/세무	2
북미	태국	방콕	+66-2-035-1531	sena@kotra.or.kr	회계	1
	캐나다	토론토	+1-416-368-3399(202)	leesh0102@kotra.or.kr	법률/회계	4
		밴쿠버	+1-604-683-1820(203)	eejeong@kotra.or.kr	-	-
	미국	애틀랜타	+1-470-682-3959	hshym@kotra.or.kr	-	-
		실리콘밸리	+1-408-432-5008	haeyun.kim@kotra.or.kr	-	-
		시카고	+1-312-644-4323(102)	jinlim@kotra.or.kr	-	-
		로스앤젤레스	+1-323-954-9500(104)	taeddy@kotra.or.kr	-	-
		디트로이트	+1-248-619-1601(503)	jaeson0123@kotra.or.kr	-	-
		달라스	+1-940-666-4680	terry.jang@kotra.or.kr	법률	1
		뉴욕	+1-646-918-5855	bskim@kotra.or.kr	법률	2
	중국	칭다오	+86-532-8388-7931(104)	sy888@kotra.or.kr	법률	1
			+86-532-8388-7931(205)	yeongmae@kotra.or.kr		
		상하이	+86-21-5108-8771(104)	shsh1224@kotra.or.kr	법률/회계	2
		베이징	+86-10-6410-6162(24)	gracemoon@kotra.or.kr	법률	1
서남아	인도	첸나이	+91-44-2847-2281	ray.lee@kotra.or.kr	-	-
		뉴델리	+91-11-4230-6300(307)	jw_han@kotra.or.kr	법률	1
중남미	멕시코	멕시코시티	+52-55-5514-3173(704)	khs@kotra.or.kr	법률/노무/ 관세/회계	6

4

관세대응 바우처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2차)

사업소개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부담금'으로 구성

| 지원대상 |

-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 '22~'24년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24년 對캐나다, 멕시코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24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사업기간 |

- ▶ 2025. 4. 1. ~ 2026. 1. 31. (10개월)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국고 보조율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진입] 2,000만원 ~ 6,000만원	(중소) 70% (중견) 50%
그린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성장] 2,000만원 ~ 8,400만원 [확장] 2,000만원 ~ 12,000만원	
소비재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00만원 ~ 3,600만원 [성장] 2,000만원 ~ 6,000만원 [확장] 2,000만원 ~ 6,600만원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세부지원요건은 공고문 참고 요망

| 세무 지원 사항 |

- ▶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①피해분석, ②피해대응, ③생산거점 이전, ④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신규 도입
-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 사용 의무
 -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

| 사업 절차 |



| 사업 신청 방법 |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유의 사항 |

- ▶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 사용의무, 미준수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것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문의처



수출바우처팀



02-6004-8400



www.exportvoucher.com

5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긴급지사화 사업

사업소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긴급 현장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해외 마케팅 등 대행

| 지원대상 |

- ▶ 미국 관세부와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대체시장 발굴 등 해외 현지 맞춤형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 ▶ 3개월 (상시 접수)

| 선정기준 |

- ▶ 해외무역관 지원가능여부 검토
 - 현지 시장성평가, 무역관 수용여력 등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가비용 |

- ▶ 100만원

| 세부 지원 사항 |

지원사항	세부내용	비고
유망 대체시장 발굴 지원	유망시장 추천봇 활용	(관세대응 119를 통한 접수 시) KOTRA 본사 개별지원
통상환경 변화대응 지원프로그램 안내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및 상담채널, 관세대응 바우처 등	KOTRA 본사 일괄안내 (관세대응 119 서비스가이드북)
타겟 해외시장 긴급지사화 지원	바이어 발굴,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출장지원 등	해외무역관 맞춤형 개별지원

| 사업 절차 |



| 사업 신청 방법 |

- ▶ www.kotra.or.kr ➡ 사업신청 ➡ '긴급지사화사업' 검색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시 '통상환경 변화대응 긴급지사화' 체크박스 선택

| 유의 사항 |

- ▶ 일반 지사화사업과 동일 무역관에 중복 신청 불가

문의처



지사화물류팀



02-3460-7439

6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

사업소개



美 관세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세동향·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상시 설명회 개최

| 지원대상 |

- ▶ (국내) 수출기업, 업종별협단체, 유관기관 등, (해외) 현지 진출기업

| 개최일 |

- ▶ 매주 목요일 (변동 가능)

| 장소 |

- ▶ KOTRA 본사 (변동 가능)

| 프로그램 |

- ▶ 미국의 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조치 현황
- ▶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상담사례
- ▶ 특별 외부연사 초청 강연
- ▶ 외부 전문가의 1:1 상담
- ▶ KOTRA 지원사업 소개

| 사업 신청 방법 |

- ▶ 무역투자24(홈페이지) 내 '사업신청'을 통해 신청

문의처



중견기업팀



02-3460-7247

사업소개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유턴) 투자를 지원



| 선정요건 |

- ▶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한 기업
- ▶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은지 10년 이상 경과한 기업일 것
-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10~25%)를 완료했거나 4년 이내 완료할 예정인 기업
- ▶ 해외사업장에서의 업종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신증설 투자**하거나 5년 이내 투자할 예정인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동일
 - ** 신설·증설·공장매입(임차)·기존 공장 내 유희면적 활용 제조시설 설치

| 선정기준 |

- ▶ 업종 및 국내복귀 유형에 따라 상이

| 사업 신청 방법 |

- ▶ Invest KOREA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 국내복귀기업지원 메뉴 ➡ 신청
 -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2022/web.do>

| 세부 지원 사항 |

지원사항	세부내용	비고
투자·이전 보조금	• 기업당 투자보조금 최대 600억원(국비기준) 지원 • 기업당 이전보조금 최대 4억원(국비기준) 지원	투자금의 최대 57% 이내
조세지원	• 법인세 최대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 •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 관세 최대 100% 감면	
고용지원	• 외국인 고용지원(E-7 비자발급 지원, E-9 한도 우대 및 지정알선 지원)	국내복귀 선정확인서 필요

지원사항	세부내용	비고
로봇도입 지원	• 로봇 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억 원)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지사화사업 등 KOTRA 사업 지원 시 혜택 부여	국내복귀기업 우대서비스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구조조정컨설팅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컨설팅 비용의 30~70%, USD 20,000 한도	모든 국가에서 신청 가능

| 사업 절차 |

▶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 구조조정컨설팅 신청 절차



문의처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1~4



reshoring@kotra.or.kr

사업소개



KOTRA의 경제·통상 정보를 기업·정책 고객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내외 온라인 채널 전파

| 주요 지원 사항 |

- ▶ 美 정책 및 업계 동향 등 주요 경제·통상 이슈 관련 보고서 작성
 - * KOTRA 본사 및 경제통상협력데스크 소재 4대 해외무역관(워싱턴, 브뤼셀, 베이징, 도쿄) 중심으로 통상 현안 전파
- ▶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 업계에 정보 전파
- ▶ 관세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FAQ 제작 및 전파

| 이용 방법 |

채널 유형	세부내용
온라인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접속 → “미국 신정부 출범” 배너 클릭 → 관련 경제 통상 이슈 확인
카카오톡	하단 채팅 → 상단 돋보기 아이콘 → ‘KOTRA’ 검색 → ‘KOTRA 세계이슈톡톡’ 채널 친구추가 → 정기 발송되는 통상 이슈 확인

문의처



구미CIS팀



02-3460-7678



ahycho@kotra.or.kr

9

KOTRA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사업소개



해외 바이어 및 우리 진출기업 대상 ①FTA 홍보 및 ②활용 상담을
통해 ③기업의 애로파악 및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FTA 활용도 제고

| 지원대상 |

- ▶ FTA 활용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수출기업 (무료)

| 지원시기 |

- ▶ 연중 상시

| 운영지역 |

- ▶ 중국, ASEAN, 인도, 일본 등 9개국 11개 센터

중국 (2)	아세안(7)						인도 (1)	일본 (1)
	베트남 (2)	인니 (1)	태국 (1)	필리핀 (1)	캄보디아 (1)	말레이시아 (1)		
베이징,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프놈펜	쿠알라룸푸르	뉴델리	도쿄

| 세부 지원 사항 |

- ▶ FTA 무료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 ▶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등

| 사업 신청 방법 |

- ▶ 문의처로 연락 시 해당 FTA 적용 지역의 센터로 연결

문의처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센 터	전 화	이메일
베이징	(86-10) 6410-6162	shensy23@kotra.or.kr
광저우	(86-20) 2208-1939	huangqi@kotra.or.kr
도쿄	(81-3) 6371-4438	hschoi@kotra.or.kr
하노이	(84-24) 3946-0511	yeoram@kotra.or.kr
호치민	(84-28) 3822-3944	hjhwang@kotra.or.kr
뉴델리	(91-11) 4230-6300	hanheum_oh@kotra.or.kr
자카르타	(62-21) 574-1522	fariidha@kotra.or.kr
방콕	(66-2) 035-1555	parkhk@kotra.or.kr
쿠알라룸푸르	(60-1)-2956-2144	jason1119@kotra.or.kr
마닐라	(63-2) 8894-4084	benzkang@kotra.or.kr
프놈펜	(855-23) 999-099	fta.bryan@kotra.or.kr

KOTRA 통상협력팀

 02-3460-3314

PART 02

정부·유관기관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정부·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주관기관	사업	지원대상
지역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운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사업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일반 국민
한국무역보험공사	美 관세 피해 애로상담 접수 데스크	美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문의처
•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에 관세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수출전문관이 관세 피해애로를 상담하고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 중	서울 02-2110-6332 부산 051-601-5165 대구 053-659-2244 광주전남 062-360-9192 제주 064-753-8757 경기 031-201-6946 경기북부 031-820-9033 인천 032-450-1135 대전세종 042-865-6151 울산 052-210-0063 강원 033-260-1675 충북 043-230-5327 충남 041-415-0605 전북 063-210-6485 경남 055-268-2541
•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법률지원 -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조세, 관세 등 관련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1) 온·오프라인 무료 법률자문 제공, 2) 국가별·주제별 해외진출 길라잡이 시리즈 발간, 3) 세계은행·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공동 법률 세미나 개최 등 맞춤형 법률지원 • 해외규제 모니터링 - 국내 핵심 산업 및 무역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외국의 관세 등 최신 규제 및 규범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이 참고하도록 뉴스레터 등을 배포하는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	국제법무지원과 (02-4220-3664)
• 수출자금 유동성 지원 • 신규 수입처 발굴지원 •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위한 금융지원 • 상담방법 - 온라인 상담신청,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 K-SURE 국내외 지사	고객센터 (1588-3884)

주관기관	사업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일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수출바로프로그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③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②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에서 미국 직수출 실적 보유 ③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내수 및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 1년) 중소기업 또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 1년) 중소기업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문의처
• 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 등 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수출단계별 30백만원~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해외진출사업팀 (055-751-9725)
•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대체 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등 특화 서비스와 함께, 기존 14개분야 수출바우처 서비스 연계 지원 (수출단계별 30백만원~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 희망기업 대상 애로파악, 해결방안 모색 등 전문가 1:1 코칭 지원	해외진출사업팀 (055-751-9725)
• 관세 피해기업은 입주기업 선정 시 최고 수준의 가점(10점), 입주대기 기간 동안 공유오피스 단기 사용(최대 4개월),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자문 서비스 이용 가능	글로벌협력처 (055-751-9685)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일시적 경영애로)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대출) 운전자금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5년 이내(2년 거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직접대출, 시설) 30억원 이내, 10년 이내(담보 4년 거치, 신용 3년 거치) •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 5년 이내(2년 거치) • (성장공유형) 20억원 이내, 7년 이내(업력 7년 미만 또는 5년 이내(업력 7년 이상))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주관기관	사업	지원대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센터 (해외 IP센터) 운영	• 현지 수출(예정) 우리기업 (제한 없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 개별대응 : 수출(예정)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국내기업 3개사 이상 으로 구성된 협의체(단, 협의체 구 성시 중소·중견기업 과반수 참여 필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제공 사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전년도·당해연도 정부·지자체 수출 판로 지원사업(산자부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등 수출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달러 미만인 기업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2023~2024년 정부지원 컨설팅 (OK FTA 컨설팅, Yes FTA컨설팅 등)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 제 외되나 (1)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 6단위 품목이 추가되는 경 우, (2)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 용 FTA협정에 대한 적용분석 및 판정이 추가되는 경우 허용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 상 기업은 지원 불가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문의처
수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산권 상담, 지재산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현지 초동대응 지원, 위조상품 확산 방지를 위한 설명회·세미나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해외 지재산권 종합지원실 (1600-9099)
수출(예정) 기업이 국제 지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전략 지원	지식재산권분쟁대응센터 (1600-8145)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을 모니터링 하여, IP-NAVI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우리기업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종합 정보 제공	분쟁정보분석실 (02-6250-5240)
수출 도전기업을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 IP 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	전략산업지원실 (02-6196-2042)
- OK FTA 컨설팅 :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협력)기업에게 품목분류에 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FTA협약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 기업의 원산지관리, 증명(확인)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취득 등 지원 -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서울 및 전국 단위 공급망을 대상으로, 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관할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및 기초 컨설팅 시행	FTA기업지원실 (1380)

주관기관	사업	지원대상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찾아가는 FTA 서비스	• FTA를 활용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 중소기업 (한-중 FTA 및 RCEP 활용 희망 업체 대상) ※ 적격업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문의처
• FTA 전문인력 운용 : FTA통상종합지원센터(1380) 및 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접수되는 기업애로 관련 상담·컨설팅을 위해 각 센터별로 관세사·원산지관리사를 배치하고 원스톱 컨설팅 시행 • 교육·설명회 및 홍보사업 : FTA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를 통해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교육·설명회, 홍보, FTA활용 유공 포상, 전시회 참가 등 추진 • 통상지원 컨설팅 사업 : 공급망, 친환경, 탄소국경제도 등 신통상규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분야 전문가 배치를 통한 상담 및 전문컨설팅 제공 및 설명회·상담회 개최를 통해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FTA·통상활용정책실 (1380)
• 한중 FTA/RCEP 활용 전문 인력 운용 : 관세·수출 절차 부문별 전문가를 배치하고 1380 콜센터, 인터넷, 내방 등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 한중 FTA/RCEP 활용 현장방문컨설팅 운영 : 관세법인 등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 분야별(FTA 활용, FTA 시스템, 수출절차) 컨설팅 시행 • 한중 FTA/RCEP 교육 및 홍보 : 한중 FTA 및 RCEP 활용 전국 세미나 및 원산지관리교육 / 한중 FTA/RCEP 활용 실무 가이드북 제작 / 국내외 FTA홍보관 운영 / 항공편 기내 매체, 디지털 옥외 광고 등 온·오프라인 광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및 협정 활용 홍보영상 제작 등 한중 FTA 및 RCEP 활용 국내외 홍보 진행	차이나데스크 (1380)

주관기관	사업	지원대상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 전국 중소·중견기업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대한상공회의소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컨설팅	•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철강·알루미늄 함량계산 필요 품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단	• 직전년도 ①수출실적이 없거나, ②수출 비중(매출액 대비)이 10% 미만인 중견기업 • 중견 후보기업, 강소기업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문의처
• 해외인증(TBT) 컨설팅 :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규정, 제품표준 등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방해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1~3일 방문하여 해외인증 전반(인증 최신정보 및 인증 획득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지식재산권(IP) 컨설팅 : 우리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검토해야 할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실안 등) 현황 및 이슈 파악, 주요 지식재산 권리화 방안과 침해 이슈 대응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FTA·통상활용정책실 (1380)
• 기본 컨설팅 :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 관련, 수출 대상 품목의 HS 코드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심화컨설팅 : 추가 관세부과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함량 분석 등을 지원. 아울러, 필요시 세부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검토 및 필요에 따라 통관서류작성 등을 지원	통상조사팀 (02-6050-3683)
• 관세청,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등 수출 지원 관련 19개 유관기관 협의체 기반 기업-기관 연계 및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제공	국제협력팀 (02-3275-0848)

주관기관	사업	지원대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중견 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등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문의처
•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중견기업의 불공정무역 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무역구제 지원 *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등	국제협력팀 (02-3275-0848)
• 사업개요 -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 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지원	통상정책실 (02-2124-3294)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